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년월일 : 1998. 4. 18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건축법시행령 개정('97. 9. 9)과 행정규제규정을 완화하는 등 구민의 생활편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던 너비 2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 건축허가, 풍치지구안의 건축허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등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 대지안 조경시설의 심의대상이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 종전 콘테이너 시설 건축, 보세장치장, 기타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 조경을 제외하던 것을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참고, 운수시설 건축물 전부에 대해 조경시설을 제외하도록 완화함(안 제22조).
- 종전 온돌 시공업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개정으로 삭제하고 온돌시공업 등록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흡수됨(안 제33조).
- 법시행령에 의해 용도지구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의 범위를 확대 개정함(안 별표11)

3.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제45조, 제56조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9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65조제1항제2호 [별표3], 제65조제1항제10호[별표11], 제65조제1항제12호[별표13], 제65조제1항제13호[별표14]
-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콘테이너, 보세장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8장을 삭제하고 “제9장”을 “제8장”으로 “제10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하고 “제34조 내지 제42조”를 “제33조 내지 제41조”로 한다

제26조제2호관련 [별표3]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식물관련시설

제26조제10호관련 [별표11] 제1호 자목중 “(농·축·수산물 판매시설
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26조제12호관련 [별표13] 제1호 아목을 삭제하고 자목중 “증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26조제13호관련 [별표14] 제1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회의) ①(생략) ②(생략) ③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제 <u>9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조례</u> <u>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u>각호와 같다.</u></u></p> <p>1. 너비 25미터이상 도로(계획도 로는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 는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에 관한 사항(다만, 공장과 주거전용의 건축물, 가설건축 물, 공작물은 제외한다)</p> <p>2. 풍치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 축허가에 관한 사항</p> <p>3.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조 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 한 간선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4.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 되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p> <p>5. 택지개발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제 외)</p> <p>6.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 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p>	<p>제7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삭제〉</p>

현 행	개 정 안
<p>7.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바다에서의 가시권내에 있는 냉동창고 및 15층이상 또는 300세대이상으로서 7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p> <p>8.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④(생 략)</p> <p>제14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축사, 창고, 식물재배사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제14조(건축신고)-----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p>
<p>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생 략)</p> <p>②(생 략)</p> <p>1. (생 략)</p> <p>2. (생 략)</p>	<p>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평 한
3.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 물중 참고시설(콘테이너, 보 세장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및 운수시설	3.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 물중 참고시설 및 운수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3조(온돌시공) ①법 제56조제2 <u>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u> <u>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u> <u>하는 자로서 구청장에게 등록한</u> <u>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u> <u>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u> <u>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u> <u>물의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u> <u>니하다.</u>	제33조 <삭제>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 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구청장이 시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 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지정을 받은 자 로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 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 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 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돌시공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찾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제1항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자 	
<p>⑤ 온돌시공자의 등록절차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 3] [신설]</p>	<p>[별표 3] 더. 식물관련시설</p>
<p>[별표 11] 자.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p>	<p>[별표 11] 자. 판매시설</p>

현 행	개 정 안
<p>[별표13]</p> <p><u>아. 참고시설</u></p> <p>자.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p> <p>[별표14]</p> <p>타.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p>	<p>[별표13]</p> <p>아. <삭제></p> <p>자.-----(건설기계및----- ----- -----)</p> <p>[별표14]</p> <p>타.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다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하다]</p>